

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
번호 '99-18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제정이유

-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■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(제2조)
 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규제의 신설·강화, 등록·공표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 -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위원회 구성(제3조)
 -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
 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
 - 당연직 위원 : 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도시환경과장, 건설과장
 - 민간인 위원 :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
 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
- 회의(제 5조)
 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 -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함
- 간사 및 수당(제6조 및 제7조)
 -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됨
 - 위원회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
- 규제신고센터의 설치(제8조)
 -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

■ 제정근거

-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
-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(도기획 11250-10346, '98. 9. 25)

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

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와 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도시환경과장, 건설과장이 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·사업소장,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(관계 전문가 포함)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7조 (규제신고센터의 설치)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

제8조 (수당등) 군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